#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서

의안번호

2657

2021. 9. 8. 기획경제위원회

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8월 1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1.9.8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서울특별시장)

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」사무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·경영 지원서비스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창업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생존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중인 업무로서.
- 나.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·

금융지원과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확보된 서울신용보증 재단과 재계약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개요

- 위탁 기간 : 2021. 12. 30. ~ 2024. 12. 29.(3년)
- 위탁수행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(이사장 : 한종관)
- 위탁업무
  -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, 교육, 컨설팅 지원
  - 소상공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위한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
  -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턴트 및 멘토 POOL 운영
  -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및 협업화사업 지원
  -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
  - 소상공인 지역별, 업종별 현황 분석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("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"고도화 및 운영·관리 포함)
  - 소상공인 정보제공 및 원활한 종합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포털 관리 운영
  - 그 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,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- 2022년 예산(안) : 100억 2천 59만원(민간위탁금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  - 민간위탁 추진 근거
  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    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~제9조, 제11조
    - 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
  - 민간위탁 추진현황
    - 최초위탁(1차) : 3년(2006.4.10~2009.3.31)
    - 재계약(2차): 3년(2009.4.1~2012.3.31), 3개월 연장(2012.4.1~2012.6.30)
      - ▶ 민간위탁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의회동의 추진으로 3개월 기간연장
      - ▶ 「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」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안 가결(2012.5.2)
    - 재계 약(3차): 3년(2012.7.1~2015.6.30), 3개월 연장(2015.7.1~2015.9.30)
      - ▶ 재계약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 종합평가 최초 실시에 따른 기간 연장
    - 재계약(4차): 3년(2015.10.1~2018.9.30), 3개월 연장(2018.10.1~2018.12.29)
      - ▶ 10년이상 장기수탁시 공개모집 전환 기준에 따른 재위탁 실시 위한 기간 연장
      - ▶ [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]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완료(2018.6.25)
    - 재 위 탁(5차) : 3년(2018.12.30~2021.12.29,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협약)

# 다. 재계약 필요성

-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소 기업・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(서울신용 보증재단)에 재계약 통한 집행업무 위탁이 타당
  -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 정책기조 유지 위해 공익성 있는 산하기관이 적합
  - 업무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경험(2006년 최초 위탁협약 이후 15년간)이

축적된 기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안정적 추진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(고유사무), 자금지원사무(업무대행)와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시너지 효과 배가 및 기업생존율 제고
-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창업준비부터 폐업·재기까지 예비창업자 및
 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
  기존 네트워킹 및 사업 연속성이 요구됨
  -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, 상권혁신 아카데미,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, 지역밀착플랫폼(민관공학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) 등의 기존 네트워킹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

─≪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≫──

■ 평가기간 : 2021.2.22.~4월(2021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)

■ 평가기관: (재)한국산업관계연구원

■ 평가내용 : 사업인프라, 사업성과, 서비스수준, 만족도 제고노력 등

■ 평가결과 : 종합점수 90.74점

- 지역본부별 창업지원팀 조직개편, 상권분석팀 신설 등 위탁사무에 적합한 구조개선 및 운영
- 예산과 사업 및 목표달성과의 연계성 확보에 의한 재정집행률, 성과지표 설정 우수
- 유관기관 인력 및 예산지원 통한 사업활용. 민관 거버넌스 구축 통한 사업지원체계 우수 등
- 개선요청사항 및 운영개선계획 수립완료(2021.6.1.)
  - 거버넌스체계 구축 통한 자원봉사자의 활용검토 → 지역활동가 및 대학생 시정인턴 등 활용
  - 인적자원구성에 있어 창업관련 법률 전문가와 직원운용에 관심 둘 것 → 외부전문가에 법무사 3명 충원완료 및 재단 내 법률전문가(변호사 자격) 3명 채용예정(2021.8월)
  - 서울시 표기 강화 등 서울시 사업인지도 및 시민접근성 제고

# 3. 참고사항

# 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)
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사무의 위탁)
  -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업무)
  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    - 4. 소기업등에 대한 경영지도

# 나. 기 타

-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(소상공인정책담당관 -5958, 21.4.20)
-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2021.5.17.) : 적정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(2021.7.13) : 적격

# 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의안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가 최초 동의(2012.5.)를 받은 후 6년이 경과<sup>1)</sup>하게 되어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(이하 "재단")과 재계약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#### 나. 민간위탁 사무 현황

-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▶상담,
  교육, 컨설팅 지원 ▶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 ▶컨설턴트 및 멘토
  Pool 운영 ▶폐업 및 재기 지원 ▶사업장 시설개선 및 협업화 지원
  ▶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.
- 이 사업의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,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교육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반면,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증가로 재기컨설팅과 사업 정리비용 지원은 증가했음.

<sup>1) 「</sup>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<u>6년</u>\*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
<sup>\*2018</sup>년 재위탁 당시에는 해당 조문 개정 이전인 7년을 적용하여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였음.

- 이에 2020년 두 차례의 계획변경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원상 복구 등 사업정리 비용지원 규모를 확대하고, 비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 등을 추진했음.

< 주요 정량목표 대비 사업추진실적 >

구분			2019년		2020년		2021년(7.31.기준)	
			목표	실적	목표	실적	목표	실적
진입기	소상공인 교육	명	14,000	15,774	7,000	8,199	10,000	6,487
	창업컨설팅	명	6,150	6,229	6,500	7,033	6,500	5,017
성장기	자영업클리닉	개	1,800	1,939	700	896	1,400	806
	자영업협업화	개	24	24	25	27	25	_
	소상공인동행 프로젝트	개	35	34	40	40	45	45
퇴로기	재기컨설팅	명	420	450	490	545	800	793
	사업정리비용 지원	개	_	234	800	754	800	793

- 이 밖에 자치구별 지역밀착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 소상공인 종합지원 조직체계를 완성하고,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· 관·공·학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.
-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25개 지역밀착플랫폼을 활용한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하고,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.

# 다.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

○ 재단은 2006년 최초위탁 후 재계약(3회)과 재위탁(1회)을 거치면서

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음.

-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지원업무의 영역이 창업 홍보에서부터 컨설팅,
  조사·분석, 전문교육 등으로 다양하며, 금융지원과 창업, 경영지원
  등의 맞춤형 전문성이 생애주기별로 확보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음.
- 재단은 15년 이상의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특화된 노하우와 사업의 연속성, 안정성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며, 특히 창업 준비부터 성장 단계, 폐업·재기까지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, 재단의 현장 경험과 사업수행조직<sup>2)</sup>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,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됨.
  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2021.04.)에서는 90.74점의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, 재계약 적격자 심의(2021.07.)에서도 적격(83점)<sup>3)</sup> 평가를 받았음.
- 다만, 재단이 15년간 장기수탁을 하고 있고, 공개모집으로 전환4)했던

<sup>2)</sup>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52명, 지역본부 16명(센터장1, 팀장11, 팀원56) 2021.7.기준

<sup>3)「</sup>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p.59 "70점 이상일 경우 적격",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(2021.2.)

<sup>4)</sup> 사무형 위탁은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, 차기 위탁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p59 "민간위탁사무 유형별 재계약 제한",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(2021.2.)

2018년 재위탁 당시 2회의 단독응찰로 수의협약한 사례 등 민간부문의 경쟁원리가 형성할 수 없는 시장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<sup>5)</sup> 사무의 대행<sup>6)</sup>이나 재단의 고유사무로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Ⅲ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<sup>5)</sup> 해당 사무는 공공성이 강하고 인건비 항목 및 수익성이 없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수탁기관이 제한적이며, 공익적 사업모델 추진으로 민간업체에는 동기요인이 없음.

<sup>6)</sup> 대행은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그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말함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p.7 (2021.2.)

#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

2657

제출년월일: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」사무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·경영 지원서비스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창업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생존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중인 업무로서.
- 나.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·금융지원과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확보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재계약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」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위탁 기간 : 2021. 12. 30. ~ 2024. 12. 29.(3년)
- 위탁수행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(이사장 : 한종관)
- 위탁업무
-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, 교육, 컨설팅 지원
- 소상공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위한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
-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턴트 및 멘토 POOL 운영

-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및 협업화사업 지원
-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
- 소상공인 지역별, 업종별 현황 분석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(「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」고도화 및 운영·관리 포함)
- 소상공인 정보제공 및 원활한 종합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포털 관리·운영
- 그 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,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- '22년 예산(안) : 10,020,590천원(민간위탁금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#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 근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~9조, 제11조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
- 민간위탁 추진현황
- 최초위탁(1차) : 3년('06.4.10~'09.3.31)
- 재 계 약(2차) : 3년('09.4.1~'12.3.31), 3개월 연장('12.4.1~'12.6.30)
  - ▶ 민간위탁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의회동의 추진으로 3개월 기간연장
  - ▶ 「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」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안 가결('12.5.2)
- 재 계 약(3차) : 3년('12.7.1~'15.6.30), 3개월 연장('15.7.1~'15.9.30)
  - ▶ 재계약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 종합평가 최초 실시에 따른 기간 연장
- 재 계 약(4차) : 3년('15.10.1~'18.9.30), 3개월 연장('18.10.1~'18.12.29)
  - ▶ 10년이상 장기수탁시 공개모집 전환 기준에 따른 재위탁 실시 위한 기간 연장
  - ▶ 「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」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완료('18.6.25)
- 재 위 탁(5차) : 3년('18.12.30~'21.12.29,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협약)

### 다. 재계약 필요성

-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(서울신용보증재단)에 재계약 통한 집행업무 위탁이 타당
-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 정책기조 유지 위해 공익성 있는 산하기관이 적합
- 업무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경험('06년 최초 위탁협약 이후 15년간)이 축적된 기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안정적 추진
-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(고유사무), 자금지원사무(업무대행)와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시너지 효과 배가 및 기업생존율 제고
-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창업준비부터 폐업·재기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킹 및 사업 연속성이 요구됨
-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, 상권혁신 아카데미,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, 지역밀착플랫폼(민관공학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) 등의 기존 네트워킹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

#### -≪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≫-

- 평가기간 : '21.2.22.~4월('21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)
- 평가기관 : (재)한국산업관계연구원
- 평가내용 : 사업인프라, 사업성과, 서비스수준, 만족도 제고노력 등
- 평가결과 : 종합점수 90.74점
  - 지역본부별 창업지원팀 조직개편, 상권분석팀 신설 등 위탁사무에 적합한 구조개선 및 운영
  - 예산과 사업 및 목표달성과의 연계성 확보에 의한 재정집행률, 성과지표 설정 우수
  - 유관기관 인력 및 예산지원 통한 사업활용. 민관 거버넌스 구축 통한 사업지원체계 우수 등
- 개선요청사항 및 운영개선계획 수립완료('21.6.1.)
  - 거버넌스체계 구축 통한 자원봉사자의 활용검토 → 지역활동가 및 대학생 시정인턴 등 활용
  - 인적자원구성에 있어 창업관련 법률 전문가와 직원운용에 관심 둘 것 → 외부전문가에 법무사 3명 충원완료 및 재단 내 법률전문가(변호사 자격) 3명 채용예정('21.8월)
  - 서울시 표기 강화 등 서울시 사업인지도 및 시민접근성 제고

#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)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(사무의 위탁)
-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(업무)
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  - 4. 소기업등에 대한 경영지도

# 나. 기 타

-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(소상공인정책담당관-5958, 21.4.20)
-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1.5.17.) : 적정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('21.7.13) : 적격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장현아 (☎2133-5194)